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화 등〉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99호)

2025.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화 등	3

I. 개요

1.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19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7.

(3) 회 부 일 : 2025. 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의 단체급식소의 주된 이용자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사람들임. 따라서 사회복지급식소가 제공하는 단체 급식의 영양과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영양과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영양관리 및 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8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의무화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법상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u>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u>사회복지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한다. ③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 ----- -----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와 방법, 공표의 방법 등-----.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나. 검토의견

-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의 책무) 현행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¹⁾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급식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의 입법목적인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언적·유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실체적·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의무화 등) 현행법 제5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현행법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음.

□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14,638개소의 사회복지급식소 중 3,321개소(28.9%)는 영양사가 있으나, 10,402개소(71.1%)는 영양사가 없으며,³⁾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식단 제공 등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3,428개소(33%)만이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①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3) [참고 1]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 급식소 운영 현황

전국 120개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⁴⁾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사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급식소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 등록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에 개정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법 제8조⁵⁾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⁶⁾에 따르면, 실태조사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 현황, 위생 및 영양관리 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의 급식 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등이

4) [참고 2] 전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등록 급식소 현황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실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복지급식소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 현황
2.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현황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급식 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식생활 교육 현황
5.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주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법 시행('22.7.28) 이후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사회복지급식소 수 및 영양사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해서는 위생 및 영양관리 현황, 종사자·이용자 만족도 및 식생활 교육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 관계 부처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복지급식소는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지를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위생·영양안전을 위한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의무적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경우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에게 사회복지급식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 급식소 운영 현황(2024년 기준)

구 분		계	영양사無	영양사有
전체 총계		14,638	10,402	4,236
노인 복지시설	소 계	11,430	8,109	3,321
	노인주거복지시설	268	175	93
	노인의료복지시설	6,036	3,967	2,069
	노인여가복지시설	1,479	1,119	360
	재가노인복지시설	3,617	2,828	789
	노인기타시설*	30	20	10
장애인 복지시설	소 계	3,208	2,293	915
	장애인거주시설	1,515	1,079	43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076	732	3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86	465	12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3	2	11
	장애인가타시설**	18	15	3

* 노인기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 장애인가타시설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장애인쉼터 등

참고 2

전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등록 급식소 현황(2024.12.)

시도 (센터수)	센터명	등록시설 수	시도 (센터수)	센터명	등록시설 수
계	120	3,428			
서울 (9)	도봉구	32	충북 (8)	청주시3	95
	노원구	10		충주시	40
	강서구	61		제천시	34
	금천구	6		영동군	31
	송파구	49		증평군	26
	강동구	12		진천군	40
	중랑구	10		청주시1*	-
	마포구	35		청주시2*	-
	광진구	64	충남 (10)	천안시	57
부산 (3)	진구	15		보령시	14
	해운대구	20		아산시	26
	사하구	28		서산시	9
대구 (7)	중구	16		논산시	25
	동구	15		계룡시	12
	서구	14		당진시	34
	북구	26		서천군	16
	수성구	14		예산군	8
	달서구	38		태안군	5
	군위군*	-	전북 (8)	전주시완산구	37
인천 (7)	동구	3		군산시	26
	미추홀구	40		익산시	39
	연수구	21		정읍시	16
	남동구	55		남원시	7
	부평구	35		김제시	16
	계양구	105		부안군	7
	서구	85		진안군*	-
광주 (5)	동구	16	전남 (8)	순천시	42
	서구	35		광양시	39
	남구	27		담양군	4
	북구	37		화순군	33
	광산구	50		장성군	12
대전 (5)	동구	21		신안군	10

시도 (센터수)	센터명	등록시설 수	시도 (센터수)	센터명	등록시설 수
	중구	28		나주시	31
	서구	44		신안군*	-
	유성구	33		포항시1	46
	대덕구	25		김천시	31
울산 (3)	남구	22	경북 (12)	안동시	34
	동구	18		구미시	43
	울주군	18		영주시	20
세종 (1)	세종시	32		영천시	36
경기 (16)	의정부시	31		상주시	21
	부천시	156		문경시	20
	평택시	17		경산시	49
	동두천시	20		의성군	11
	안산시	81		칠곡군	51
	고양시	55		예천군	4
	구리시	2	경남 (10)	창원시1	53
	시흥시	43		김해시	12
	하남시	30		통영시	20
	용인시	38		거제시	25
	파주시	35		양산시	22
	김포시	45		함안군	12
	화성시	61		밀양시	9
	양주시	16		진주시	41
	연천군	5		사천시	26
	광명시	4		창원시2*	-
강원 (7)	춘천시	7	제주 (1)	제주1	45
	원주시	34			
	강릉시	50			
	동해시	3			
	태백시	4			
	속초시	48			
	영월군	6			

* 6개소(대구군위, 충북청주1·청주2, 전북진안, 전남신안, 경남창원2)는 '24년 12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로 전환되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25년부터 지원